의안 번호	54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

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 민간위탁
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 민간위탁
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9.28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일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(의안번호 제54호)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은 신체장애, 정신장애,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・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,

나. 민간위탁 기간이('22. 1. 1. ~ '26. 12. 31.) 만료됨에 따라,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창원시립복지원(노숙인재활시설) 운영 및 관리

나.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노숙인 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「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·지역 자원을 활용함이 효과적임
- 이용 노숙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제공 가능
-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유연하고 민첩한 접근이 필요함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: 창원시립복지원 운영 및 관리 전반

- 노숙인(재활)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: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
- 일시보호시설 기능 수행
- 그 밖에 창원시립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라. 시설 현황

○ 기본현황

시설명	위 치	규 모	종사자 (정원/현원)	입소자 (정원/현원)	現 운영법인	설치일자	비 고
창원시립 복지원	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27	1,632.53㎡ 지하1층 지상2층	16/16	60/31	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 (대표 : 최성은)	1959.4.1.	현위치 건립 2023.3.20.

○ 층별 주요시설

구 분		면 적(㎡)	주 요 시 설
지상	2층	326.72	10인 수면실(남,여)
		65.31	오락실
		15.87	숙직실
		231.47	화장실, 외부휴게공간, 공용공간 등
	소계	639.37	
	1층	72.04	사무실
		54.60	자활작업실
		45.38	조리실
		75.94	식당
		20.68	격리실
		28.34	일시보호실
		8.81	상담실
		363.04	화장실, 외부휴게공간, 공용공간 등
	소계	668.83	
지하	1층	86.02	재활프로그램실
		56.93	기계실
		181.38	창고 등
	소계	324.33	
계		**1,632.53**	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위치도



전경사진

마. 위탁기간 : 5년('27. 1. 1. ~ '31. 12. 31.)

바. 위탁예산 : 1,388,449천원(2026년 기준)

사. 위탁방법 : 민간위탁(공개모집)

아.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· 의결

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❍ 창원시립복지원은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용 노숙인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

❍ 민간 법인의 참여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영 전문성 강화

차. 운영성과 분야(성과점검) ⇒ "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A등급"

❍ 평가영역: 조직운영 등 5개 영역 25개 항목 ※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참조

총점등급	평가영역					
	계 (100)	조직운영 (16)	재정 및 인적자원관리 (32)	프로그램 및 서비스 (24)	생활인의 권리 (20)	생활인의 변화 (8)
A	92	15	29	23	19	6

※ 등급구분기준 : A등급(90점 이상~100점), B등급(80점 이상~89점 이하), C등급(70점 이상~79점 이하), D등급(60점 이상~69점 이하), E(59점 이하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노숙인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.

○ 창원시립복지원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및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 및 치료·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임.

○ 노숙인 재활시설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[1] 및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[2]과 「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[3]은 시장이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② ~④ 생략)
⑤ **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**

2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**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

3) 「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 운영) ① 시장은 복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

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.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각종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또한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제1항[4]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자체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, 2023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한 노숙인생활시설 평가(평가주기 3년)에서도 종합 A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,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당초의 위탁 목적이 전반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[5]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.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[6]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본 동의안이 조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

4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(성과평가) ① **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**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5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13조(계약 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**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**로 한다.

6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**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**

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적정한 조치임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[7]과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제1항[8]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‘공개모집’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.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 다만, 현재 입소정원 60명 대비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대비 이용률이 약 51.7%에 그치고 있는 반면, 종사자는 정원 16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어 시설 이용률에 비해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 따라서 향후 재위탁 시에는 입소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입소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성과, 예산 집행의 투명성, 입소자 인권보호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와 지도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7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**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**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8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(수탁기관 선정 방법) ① **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**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5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